

	최고경영자과정운영규정	규정번호	3-4-30
		제정일자	2024.01.01.
		개정일자	
		개정차수	
		소관부서	평생교육원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(이하‘본원’이라 한다)의 지도자과정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과정의 명칭은 “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”(이하‘최고경영자과정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장 운영 및 운영위원회

제3조(운영) ① 이 과정은 비학위 과정으로 단기 공개강좌로 운영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강생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
2. 과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제 규칙에 관한 사항
4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장 모집 및 전형방법

제6조(모집인원) 과정의 모집인원은 30명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구비서류)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전형방법)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며, 입학은 평생교육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수강료 납부)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그 외 별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수강기간 및 수업

제10조(수강기간) 수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1조(개강) 1년에 2회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수업) 학기당 수업기간은 12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기간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교과목) 이 과정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수료자격) 수료자격 기준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으로 한다. 다만, 질병, 출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장 평가 및 표창

제15조(평가) 강의평가는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6조(표창) 수강기간 중 학업참여가 뛰어나거나 이 과정 또는 평생교육원 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제6장 장학금

제17조(장학금) 평생교육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지급은 한 학기 단위로 한다.

제18조(장학금명칭)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금은 '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학비감면 장학금'으로 명명한다.

제19조(지급대상 및 지급기준)

- ① 안산대학교의 교직원 및 가족
- ②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중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관련기관 종사자
- ③ 기타 최고경영자과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

제20조(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)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금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21조(지급방법)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금은 사전감면으로 지급한다.

제7장 수료증 수여 및 수강료 반환

제22조(수료증서 수여)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안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.

제23조(수강료 반환) 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원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